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Ⅰ) : 그 법철학적 기초

강 희 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발 간 사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우리 노동운동의 미래이고, 우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계속적 권익확보가 예상되는 미개척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가 경영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므로써 보다 인격적 존재가 되고 그의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의 독단적 결정과 이윤독점의 체제가 아니라 공동의 의사결정과 이윤의 균점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실현도구로서 의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공동결정제도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포괄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회적 사항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본투자, 신기술도입, 작업조직 결정과 같은 핵심적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공동결정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때 제3자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법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번에 출간될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1)"은 바로 이런 공동결정의 법철학적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무엇보다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노동은 사소유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소유의 공동체성에 기하여 전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래와 같이

종속적 근로관계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적인 의의가 부가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결정제도를 단순히 노동자의 자유의 확대로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노동의 주체로서 경제를 통제하고 경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동문제를 해결 또는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래의 공동결정보다 더 넓고 더 강한 공동결정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을 연구하시고 집필하신 경희대 법대 강희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통하여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공동결정제도를 단순히 근로자의 의사결정에의 참가라는 형식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소유권에 내포된 사회성개념을 포함하여 진정한 경제적 민주화를 이끄는 도구로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국내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 내지 공동결정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다룬 최초의 논문인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도 크다는 점도 밝히고자 합니다.

1997년 4월

한 국 노 동 조 합 총 연 맹
위 원 장 박 인 상

< 目 次 >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계기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대상 ····· 5
4. 연구진행의 방향 ····· 7

제2장 예비적 지식 ····· 9
1. 경제적 참여문제의 위상 :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법정책적 문제 · 9
2. 시대변동과 참여이념
: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독일노동계의 태도변화 ····· 10
1) 소극적 수용시기 ····· 11
2) 적극적 수용시기 ····· 15

제3장 문제인식의 출발점으로서 근로관계의 실체와 후기자본제 경제의 구조적 현상 ····· 23
1.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현실상황 ····· 24
2. 후기자본주의경제체제의 현실구조 ····· 25
1) 대기업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 25
2) 기업구조에 대한 기술발전의 영향 ····· 27
3) 기업과 국가의 결합 ····· 30
3.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자유를 위한 새로운 발상전환의 필요 32

제4장 노동과 소유권 ····· 34
1. 소유의 원천으로서 노동과 그 상황변화 ····· 36

2. 소유권의 공동체적 성격 ····· 42
3. 근대적 소유관계에 있어서 노동과 그 주체의 분리 ····· 48
4. 소유관계의 완화로서 경제적 공동결정 ····· 55

제5장 형식적 민주주의의 극복 : 경제민주주의 ····· 58
1.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 ····· 58
2.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의 흠결 ····· 63
1) 법치국가의 이념으로서 Kant의 개인주의철학 ····· 63
2)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 ····· 64
3. 실질적 법치국가로 가는 이정표로서 공동결정 ····· 66

제6장 결론 ····· 69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계기

국제적 무역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1990년 이후부터 주로 경영계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유연화를 위하여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ILO와 WTO의 가입 이후 노동법개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동상이몽이긴 하였지만, 노사정 모두에게 상당히 무르익어갔다. 마침내 1996. 4. 24. 김영삼 대통령이 신노사관계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1], 이에 기하여 대통령자문기구로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조직되고, 노동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법의 개정을 위해서 노사 쌍방이 의견을 개진하고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노동법의 쟁점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열린 광장'이었다. 노동법의 개정은 김대통령이 발표한 신노사관계에 관한 5대원칙 즉 "공동선의 극대화", "참여와 협

1) 1996. 4. 24 자 김영삼 대통령의 담화발표문 참조.

력의 원칙",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의 원칙"에 의해서 그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그 개정된 결과를 보면, 이러한 5대 원칙이 노동법의 개별조항으로 용해되어서 노동법의 지도원리로서 발전하지 못하고, 상황논리에 기한 사용자 측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명분에 그치고 만 것은 크나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법의 사회적 성격은 후퇴하고, 그 동안 뒤로 물러나와 있던 시민법적 성격이 특히 근로계약법의 전면에 상당히 부각되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법개정논의 중, 특히 전문위원간담회에서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대명제 하에 노사협의회법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대상으로서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참여와 협력"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제도로서 구현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노사의 대표자들 대부분은 참여문제의 중요성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특히 사용자와 정부의 대표자들은 협력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정도가 논의되고, 노사간의 협력의 전제로서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2] 사실 "참여와 협력"에 있어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협력이란 강요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노사관계개혁위원회

2) 노사협의회법은 그 명칭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으나, 그 내용과 구도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법개정 이후에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근로자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원의 노동법개정논의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노사 쌍방의 견해와 태도가 상당히 밝혀졌는데, 참여와 협력의 원칙과 관련하여 밝혀진 중요한 사항은 노동계조차도 진정한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여의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로지 노동계는 노사협의회법을 약간 수정하는 차원에서 참여문제를 주장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참여와 협력이 실현되려면 기업차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다. 노동법개정을 위한 실무자간담회에서 노동계전문위원이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의 도입문제를 주장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간에 근로자의 참가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진전이었다. 한국노총의 실무자가 노사협의회제도를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로 승화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3)]

그러나 한국노총측의 노동이론가 및 실무진들도 노사간의 공동결정문제에 관한 실질적 논의를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경영참가제도에 관한 개념적 기초마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듯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가 일천하고, 노동진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현실정치적 상황 때문에 걸출한 노동운동가와 이론가가 탄생할 수 없었고 또 노동조합의 재정적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노동계의 지도이념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

3) 이 당시 한국노총은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업경영으로부터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노사협의회법을 경영참가법으로 대치할 것을 주장하면서 "경영참가법 제정안"을 제의하였다.

에도 노동법개정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기업차원에서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모색하면서, 장기적인 노동질서정책적 차원에서 경제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의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의 의욕적인 첫걸음은 이 제도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연구의 목적

한국의 산업발전수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근로자들의 관심과 노동운동은, 물론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위한 투쟁단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근로조건의 향상과 노동과정에 있어서 자기실현 및 주체적인 삶을 위한 제도도입 쪽으로 방향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방향의 전환은 노동운동의 지도이념과 노동조합의 프로그램에도 곧 반영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경제민주주의 또는 산업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표방될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사업장과 기업 차원에서 기업의사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 참가와 전체사회적 차원에 있어서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노동주체로서의 실질적 참가를 의미하는 경제적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로서 대두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법적·경제적·사회적 재편성 내지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한국노총이 지향하고 있는 개별사업장 차원에 있

어서의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를 정당화하는 보편적인 일반이론적 정초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한국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에 즈음하여 노동과 자본을 대등하게 조화시켜서 전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를, 기업 및 개별사업장 차원에서는 노동의 인간화를 꾀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로서 노동과 자본의 공동결정제도에 관한 법철학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대상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적 공동결정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제적 공동결정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의 합치가 없다.[4] 경제적 공동결정의 개념도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 및 경제의 질서에 관한 기본적 관념에 따라서 공동결정 및 경제적 공동결정의 개념은 다르게 파악되고 또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5]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경제

---

4) 경제적 공동결정의 기본이념과 기초에 관한 대표적인 독일 문헌을 필자가 임의적으로 정리하면: H.J. Teutenberg, Geschichte der industriellen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Uraprung und Entwicklung ihrer Vorläufer im Denken und in der Wirklichkeit des 19. Jahrhundert, Tübingen 1961 ; A. Christmann, Wirtschaftliche Mitbestimmung im Meinungssteit, 2 Bde., Köln 1964 ; F. Fabricius, Mitwestimmung in der Wirtschaft. Ein gesellschafts-, wirtschfafts- und rechtspolitisches Problem, Frankfurt a.M. 1970 ; J. Weis, Wirtschaftsunternehmen und Demokratie, Köln 1970 ; W. Däubler, Das Grundrecht auf Mitbestimmung, Frankfurt a.M. 1973 ; R. Biskup(Hrsg.), Partnerschaft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Bern/Stuttgart 1986

5) 독일에 있어서 이에 관한 입장의 차이는 Alfred Christmann, Wirtschaftliche Mitbestimmung im Meinungssteit, 1 Bd., Köln 1964 참조. 이 책에서는 Christmann은 수정자유주의(Neoliberalismus), 구기독교사회이론(Katholische

적 공동결정은 다음의 세가지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다.

첫째, 사업장 차원에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또는 독일의 사업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 또는 독일의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에 개별사업장 근로자대표의 참가권한, 특히 사회적 사안에 있어서 공동결정 및 사업장차원의 인사 및 노무관리 사안에 있어서 참가, 개별사업장차원의 경제적 사안에 있어서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와 같이 기업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선출되거나 감사회에 노동대표와 자본대표가 동수로 구성되는 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동결정은 기업의 경제적 사항, 생산정책, 판매정책, 투자 및 생산연구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자기자본의 증대, 예컨대 장중단기의 차입 등 타인자본의 도입, 제품생산의 변경과 중단 등 재정에도 공동결정이 확대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이사의 선출 뿐만 아니라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셋째, 기업 차원을 상회하는, 이를테면 전체사회적 맥락에서 소위 경제민주주의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념적 형태로서 경제적 공동결정을 이해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은 Naphtali가 편집한 “Wirtschaftsdemokratie”라는 유명한 책[6]에서 발전되었다. 이 책에 서술되었듯이, 경제민주주의는 오늘날 언어관용에 의하면 순전히

Soziallehre), 신기독교사회윤리(Evangelische Sozialethik), 자유사회주의(Freiheitlicher Sozialismus), 수정마르크스주의(Neomarxismus)의 각 입장이 근로자의 공동결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가치중립적으로 정리하였다.

6) Fritz Naphtali, Wirtschaftsdemokratie – Ihre Wesen, Weg und Ziel. Berlin 1928. 이 책은 1966년 Ludwig Rosenberg의 서언(Vorwort)과 Otto Brenner의 안내글(Einführung)이 첨가되어서 다시 출판되었다.

사업장 또는 기업 차원 보다는 높은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민주주의를 의식적으로 거부하였고,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위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과 초기업적 공동결정을 결합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7)]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공동결정은 기업 차원에 있어서의 경제적 공동결정으로 한정해서 파악하고, 그 대상은 단위사업장 차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순한 참가 및 협력이 아니라 이보다 높은 기업 차원에 있어서 경제적 공동결정권을 정당화하는 법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4. 연구진행의 방향

본 연구에서 필자는 먼저 현실 경제 및 법질서 내에서 경제적 공동결정제도가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경제적 공동결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질서정책적 위상을 언급하는 한편, 공동결정이념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으며 또 경제적 공동결정이념을 통해서 노동진영이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대하여 자본진영과 타협하면서 자본제경제체제 내에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구축하려고 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동결정이념을 만들어 냈고 또 현실제도로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공동결정이념이 언제부터 노동진영에서 주장되었고 또 이에 대한 주류적 노동진영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것이 어떻게 현실적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었는지를 연

7) Christmann(각주 5), 27면.

구주제에 관한 예비적 전제지식으로서 우선 살펴본다(I). 그 다음에 공동결정이념이 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허구가 아니라, 자본주의경제를 인간화하고 또 보다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후기산업자본주의경제의 현실적 구조를 부각시키고(II),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초해서 자본주의경제체제를 그 전제로 인정하면서도 근로자가 노동의 주체로서 경제를 통제하고 경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동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공동결정이념을 현실에 변용할 수 있기 위한 법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한편에서는 자본제생산제도의 기틀인 소유권 그 자체에서, 즉 소유권에 관한 근대정치사상을 경제적 공동결정의 기초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III),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국가의 최고지도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도출하려고 한다(IV).

제 2 장

예비적 지식

1. 경제적 참여문제의 위상 :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법정책적 문제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문제를 근로자가 단위사업장 차원에 있어서 사용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종업원대표의 관여 정도로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은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 법 등 사회와 국가의 전반에 걸쳐 있는 질서정책적 차원의 문제이다.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은 근로자가 주식의 소유자, 자본의 주체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종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주체로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질서, 기업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의 구조변동을 의미한다.[8)]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동결정의 실현은 기업경제조직에 관한 문제의 일부이다. 독일에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9)]

---

8) Kurt H. Biedenkopf, Mitbestimmumg. Beiträge zur ordnungspolitischen Diskussion, Köln 1972, S. 13-35

9) 이에 관해서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문헌들이 있다. 하지만 H. Thum,

공동결정의 문제와 질서정책적 경쟁법적 회사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조직의 문제는 기업탄생의 초기부터 시장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독일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간접적인 것이긴 하지만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의 질서정책적 토론은 경쟁제한방지법에 대한 논의이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업적 자율의 주체로서 기업을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기업에 있어서 결정과정의 조직을 관련시키지 않고 유의미하게 대답될 수 없다. 60년대 초기 거대한 주식회사형태는 경쟁제한방지법에 관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논쟁의 핵심은 기업과 지분권자의 관계, 즉 주식회사와 주주의 관계 및 회사법적 결합, 즉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권자기능을 실현하는 문제이었다. 공동결정의 문제에 관한 논쟁은 기업조직에 관한 논의의 세 번째로 큰 부분이었다. 공동결정문제는 다른 두가지 문제를 수반하였지만, 근년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전면에 대두하지는 않았다.[10]

2. 시대변동과 참여이념 :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독일노동계의 태도변화

산업화과정의 진행에서 근로자의 종속은 더욱 가중되고 그에 따라 빈곤도 증가하였다. 언제부터 독일에서 공장주가 종속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일방적으로 지배하였던 현실에 대한 진지한 회의의 목소리가 드높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명백

Wirtschaftsdemokratie und Mitbestimmung. Von den Anfängen 1916 bis zum Mitbestimmungsgesetz 1976, Köln 1991; Teuteberg(각주 4) ; 김형배, 근로자참가제도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배경-서독을 중심으로-, 김형배, 김태욱, 박영철, 김병주 : 한국사회개발연구 XI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5, 1-72면 참조.

10) Biedenkopf(각주 8), 13면

히 확정할 수 없다. 국가학자 Robert von Mohl이 사업장에 있어서 노동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자대표를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은 1835년이었다.[11] 그러나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노동생활에 있어서 타인결정을 완화하고 종속노동자에게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공동결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념은 있어왔을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짐작컨대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였고, 노동자의 상황이 야기하였던 위험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적 개혁론자에 의해서도 이미 언급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특히 근로자들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렇듯 독일에서 근로자의 공동결정이념은 산업화과정 속에서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본격화되었지만 초기에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왜 노동진영이 초기에 공동결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을까? 누가 공동결정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주장하였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경제적 공동결정이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12]

1) 소극적 수용시기

"공동결정"이라는 말은 1900년 이후에 생겨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작업장에서 공동결정은 Stephan Born에 의하여 1848년 건립된 최초의 독일노동자조직인 일반독일노동자형제단(die 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brüderung)에 의해서 이미 요구되었다.[13] 이

---

11) Teuteberg(각주 4), 24면이하 참조.

12) 아래의 내용은 주로 Otto Brenner, Mitbestimmung-eine Idee im Wandel der Zeit, in : Festschrift für Wolfgang Abendroth zum 60. Geburtstag (Gesellschaft Recht und Politik), Neuwied/Berlin 1968, S. 63-73에서 옮겼음을 밝혀둔다.

13) Hermann Müller, Die Organisation der Lithograph und Steindrucker,

단체는 공장에 있어서 감독자와 작업십장에 대한 자유선거를 주장하였다. 정부에 대한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는, Franz Schweninger 같은 일반독일노동자형제단의 대표자의 표현에 의하면, 노동자단결에 대한 법률적 허용에 대한 요구보다 강력하였다. 이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19세기 중엽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임명한 감독자와 십장의 절대적 명령권에 대하여 얼마나 억압적으로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대표의 직접선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에서 일반독일노동자형제단은 노동과정의 인간화를 기대하였다.

1848/49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Frankfurter Nationalversammelung)에 근로자대표는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초 독일의회의 소수파가 선출된 종업원대표와 공장소유자로 구성된 공장위원회(Fabrikausschuß)를 규정하였던 법률안에 합의하였다. 공장위원회는 공장규정을 결의해야 하고 이어서 지역공장위원회에서 선출된 공장협의회(Fabrikrat)로 하여금 공장규정을 재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배후에 포진하고 있던 진보적 사회개혁론자들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1848년의 혁명에 뒤이은 반동시대를 맞이하여 근로자조직의 기초가 여지없이 희생되었고, 그래서 노동과 생활관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보루마저 상실되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세력의 재성장과 단결금지의 폐지라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였다. 1868년에서 1878년까지 12년간 사회주의자법률에 의하여 중단되었던 노동조합의 승인을 위한 투쟁이 18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재기되고, 이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에 있어서 공동결정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생긴 최초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동결정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1.Bd. Berlin 1917, S. 420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이미 사업장노동자위원회(Betrieblicher Arbeiterausschüsse)의 합목적성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 1891년 이후에도 영업질서에 관한 개정법안과 노동자보호법률에서 얼마간의 권리를 가진 임의적 위원회의 설치가 허용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시민적 사회개혁론자는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업장노동자위원회는 노동규정의 제정시 그 내용을 알리려는 기회를 얻지 못하여 노동규정에는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당시에는 독일 사회당에 친근한 자유노동조합들조차 사업장노동자위원회제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작용하는 압력 등 통상적인 사업장에서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운명을 개선할 적절한 방법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노동조합의 주관심사는 사업장 밖에서의 임금과 협약정책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1899년 프랑크푸르트에 개최된 독일노동조합 제3차 대회에서 Emil Döblin의 강연은 “노동조합투쟁에 있어서 협약과 협약공동체”이었다.[14] 여기서 Döblin은 협약체결을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의 쟁취”로 표현하였다. 이때에 처음으로 공동결정이라는 개념이 독일노동조합회의의 회의록에 나타난다. 제3차 대회에서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수용한 Döblin이 성안한 해결안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의 확정시 기업가 편에 있어서 노동자의 평등권에 대한 승인의 증거로서 볼 수 있고, 더우기 협약된 것의 유지와 이행을 보장하는 기업가 및 근로자의 강력한 조직이 현존하는 직업에서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때그때의 합의의 범위와 기간이 체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직업의 속성에 달려 있다”라고 쓰여 있다.

14) 독일노동조합 제3차 대회 회의록, 155면

이 때부터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업가의 결정권을 반대하였다. 1905년 Köln에서 개최된 독일노동조합 제5차 대회의 논의도 완전히 이러한 노선으로 가고 있었다.[15] "노동자의 법률적 대표"에 관한 Paul Umbreit의 강연과 Otto Hue의 공동강연에 의하면, 노동회의소(Arbeitskammer) 또는 노동자회의소(Arbeiter-kammer)의 표결에서 3분의 2가, 기업가와 노동자 동수로 구성된 노동회의소에 반대하고, 순수한 노동자회의소에 찬성하였다. 이것이 전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공동결정에 관한 구상의 첫 번째 맹아이었다. 여기에서 Hue가 제기하여 대회에서 수용한 해결안에서 그 주요원칙은

"... (노동조합) 대회는 대등수의 노동자회의소에서 노동자입장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회의소가 근로자의 이익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의사조사와 노동통계수집 특히 노동보호법의 입안 집행 감독에 있어서 협동적 노동계약의 촉진에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노동조합 제5차 대회에서 "제국과 국가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동등한 공동참가의 의의가 부각되었다. 그전에 Umbreit는 "기업가와의 단순한 대등은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입법에 대한 보다 많은 직접적인 영향, 보다 많은 자기지배, 보다 많은 권력은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운동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업차원에 있어서 경제적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요구는 이때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당시에는 주로 사회정책적인 사항들이 노동조합 지도사상의 전면에 열거되어 있었다. 그러나

15) 독일노동조합 제5차 대회 회의록, 190면 이하 참조.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그 무게중심은 곧바로 사회정책적 사항들에서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동하였다. 공동결정에 관한 생각이 얼마간 의미를 얻고 기업가의 전통적 지배권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변동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하여 감에 따라, 공동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경제적 영역에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2) 적극적 수용시기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1920년경 종속적 노동의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승인되고, 이와 더불어 공동결정과 경제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거의 동의어적 개념이 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중심적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일반독일노동조합연맹(der Allgemeine Deutsche Gewerkschaftsbund : ADGB), 소위 자유노조(Freie Gewerkschaften)에 소속되어 있던 단체들에게 그랬듯이, 이들 두 개념은 하나의 사회질서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ADGB 혼자에게만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노동조합(die Christlichen Gewerkschaften)도 공동결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노동조합은 근로자와 사무직원 및 기업가의 완전한 동등을 추구하였으므로 모든 경제적 결정에 공동으로 참가하려고 시도하였다. 공동결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노동조합이 기업질서를 동업자적인 직업신분질서로 개선해가려고 하였지만, ADGB는 공동결정에 의한 경제 및 노동생활의 민주화를 통해서 점차 사유자본주의를 수정하고, 자유사회주의적 질서로 변동하는 과정을 보고 있었다. Hirsch-Dunckerschen 노동조합단체는 경제적 자기지배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이들 생각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자유방임

적 노동조합조직이 기업가의 중요한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즉 이들은 “모든 사업장에는 엄격한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 결국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들이 개별 사업장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16]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동등한 공동결정을 위한 공간이란 있을 수 없다. 이에 의하면 결국 기업가가 집에 주인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운동(Rätebewegung)이 공동결정의 이념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독일노동조합 제10차 대회[17]에서 Richard Müller가 대표하는 일군의 지지자들은 노동조합 최고조직이 1918년 기업가와 합의한 중앙집권적 노동공동체(die Zentrale Arbeitsgemeinschaft)를 반대하였다. Müller는 중앙집권적 노동공동체의 과제를 간단하게 요약하였던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산업을 구조할 수 있는가? 위협적인 모든 경제부문에 휙 스쳐가고 있는 위협적인 사회화, 국가화 및곧 있을 혁명으로부터 기업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금속 및 철강산업단체의 업무집행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앙집권적 노동공동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하였다. Müller는 현실성을 상실한 중앙집권적 노동공동체에서 동업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단호하게 부정하였다. 협의회운동에는 종업원에 의한 경제의 민주화가 전제되어 있다. Müller는 사회주의적 사회질서에서 주요절차는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과 국가관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업장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실효성있는 견제력을 만들려고 하였다.

1918년이후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제정된 조국보조근무법률(Vaterländisches Hilfsdienstgesetz)은 노동자에게 전쟁하에서 부역

16) Gewerkverein Deutscher Metallarbeiter(Hrsg.), Demokratie im Wirtschaftsleben - Wirtschaftliche Selbstverwaltung, Berlin 연도미상, S. 32ff.
17) 독일노동조합 제10차 대회 회의록, 426면 이하

을 철저하게 강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1914년 이전에 임의적으로 도입된 노동자위원회를 논리적으로 계속하게 하였다. 1920년에 통과된 사업장평회법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에 있다. 노동조합은 이미 일찌기 그것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였다. Theodor Leipart는 1919년 Nürnberg에서 "사업장평의회 또는 노동자평의회가 노동조합을 보충할 수 있다고 노동자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은 큰 실수일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모든 동정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장평의회에서 어떠한 만병통치약을 탐지하지 못하였다. 사업장평의회가 모든 사업장에 관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동자의 이익도모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사업장평의회는 노동자협의회와 동일하다. 이름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강조하였다. Nürnberg대회에서 결의한 "노동조합의 장래활동에 관한 기준선"은 "경제생활과 사회정책의 모든 문제를 근로자와 기업가의 동등한 대표기관에서 해결하는 노동공동체의 창설을 통해서 정치적 혁명 직전까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서 경제민주화를 촉진시켰다. 노동조합의 이 모든 성과는 가치있는 공적이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노동조합의 과제는 기껏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노동자의 공동결정권은 전체적 생산에서, 개별기업에서 시작해서 중앙경제조직의 간부진에까지 실현되어야 한다. 사업장내에는 자유선출된 노동자대표기관이 창설되어야 하며, 이 기관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노동조합의 권력에 기초하고 있는 경영지도부와 공동으로 사업장민주화를 실천해야 한다. 사업장민주주의의 기초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 집단적 노동계약이다. 구체적인 사업장협의회의 과제, 즉 그 의무와 권리는 집단계약 법률적 공동결정에 근거하여 확정될 수 있다. … "

이 때부터 “경제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노동조합의 경제정책적 목표에 점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개념은 1918년의 중앙노동공동체에서 가시화되고 논의되었던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주장 차원에서 벗어났다. 1920년대에 개최된 모든 노동조합대회에는 많든 적든 공동결정에 관한 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1925년 Breslau에서 열린 독일노동조합 제12차 대회[18]에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 강연하였던 Hermann Jäckel이 인쇄공을 위한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제와 공장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확정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대한 자본가의 처분권이 축소되고, 자기 노동력에 대한 개별노동자의 처분권이 근로자 전체, 즉 조직에 양도되었다. 공장에서 기업가와의 긴 투쟁 이후 구성된 첫 번째의 노동자위원회와 함께 사업장과 경제의 민주화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실현되었다고 Jäckel이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위원회 및 그 후의 사업장평의회는 그 실무적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될 수 있었다.

1928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독일노동조합 제13차 대회에 제시된 “경제민주주의”[19]라는 제목의 책은 바로 Fritz Naphtali가 수년간의 숙고한 결과이었다. 이 대회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에 관한 보고자로서 연설한 Naphtali는 대기업과 기업조직에 달려 있는 경제적 성쇄에 관한 결정은 이제 더이상 사적인 영역에 남아 있을 수 없고 공동체의 사항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였다.[20]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자본과 노동의 조화에 관한 환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21] 이러한 비판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

18) 독일노동조합 제12차 대회 회의록, 202면 이하.
19) Naphtali(각주 7) 참조.
20) 독일노동조합 제13차 대회 회의록, 170면 이하.

다.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서서히 사유(私有)자본주의를 수정하고 자유사회주의적 질서로 서서히 변화시켜려고 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력의 결과는 투쟁없이는 노동조합의 품안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Naphtali도 노동질서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조직적 노동의 힘과 투쟁의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통일적인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프로그램적 논의는 ADGB가 폐지하였던 194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시대에 독일노동조합연맹의 경제정책적 기본원칙이 München에서 성립하였다.[22] 경제생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해서는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정치생활의 민주주의에는 경제생활의 민주주의가 보충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인 부자유와 노동생활에 있어서 종속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는 인식이 결정적이다. "시민, 우리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Hans Böckler가 외쳤다. "공동체생활의 중요한 모든 사항에서, 특히 국민의 경제적 사안에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행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려고 한다." "경제

---

21) 전통 마르크스주의진영에 소속되어 있었던 노동운동가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전통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운동의 목적이 노동자의 공동결정(Mitbestimmung)을 획득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을 쟁취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결정은 노동운동을 자본주의라는 틀속으로 통합시키려는 패배주의로서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자에게 감방시설과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자로서 Karl Korsh를 들 수 있다. Korsch, Auf dem Wege industriellen Demokratie, Frankfurt a.M. 1968 참조

22) 독일노동조합연맹 설립총회(1949. 10.12.-14.) 회의록, 184면과 318면 이하.

운영과 경제형성의 인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조직근로자의 공동결정"이 München의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이것을 1933년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강조점이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Naphtali 및 그의 공동연구자들이 발전시켰듯이, 경제민주주의의 관념에 있어서 그 무게중심은 이 때까지 전체경제부문, 즉 독점과 카르텔을 통제하고,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조직을 동수의 자본대표와 노동대표 대표로 구성해서 근로자의 자기지배의 구조를 구축하는데에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기업 및 사업장 영역의 전면으로 기울어졌다. 그런데 기업과 사업장 차원에 있어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문제에 대하여Naphtali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어쩌면 그의 생각은, 기업과 사업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공허하다고도 할 수 있다.

Düsseldorf의 프로그램이 1963년부터 독일노동조합연맹의 정책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데,.[23] 여기에서 독일의 최대 사회조직인 노동조합연맹이 현재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미래를 정향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전의 모든 노동조합 프로그램에서 보다 훨씬 강력하게 공동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 규약은 전문에서 독일의 상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원대한 목표를 구상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공동결정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모든 시민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의사형성에 동등하게 참가케하기 위하여 사회와 경제의 개조를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결정은" - "경제정책의 기초"의 절에서 말하듯이 -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본질에 일치한다." 끝으로 "경제정책의 수단"의 절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근로자의 동등한 공동결정은 경제적 사회적 인사적 결정에 있어서

23) 독일노동조합연맹 임시연방총회(1963. 11. 21. - 22.) 회의록.

보장되어야 한다. 공동결정은 사기업, 공기업 및 공공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공동결정권이 구축되어야 하고,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 모든 대기업에주주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결성된 감독회의를 구성하고, 감독회에 있어서 다수의 근로자 대표의 의견에 반할 수 없는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 이사회와 경영진에 임용되어야 한다. 사업장 이상의 공동결정은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 동수의 조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독일노동조합연맹의 공동결정개념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기업과 사업장에 중심점이 있다. Düsseldorf 기본프로그램의 입안자는 공동결정과 같은 경제정책의 수단이 사회문제 전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전체적으로 자유 사회질서를 만들고 확보하는 조치의 한 묶음을 요구한다. 국민경제의 구획계획, 공공예산, 재정경제정책, 투자조종, 공적 및 사적 공동경제, 경제권력의 통제, 경제적 공동결정 및 계획, 경쟁이 이에 속한다.

독일의 경우만을 두고 본다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배경으로 해서 공동결정의 이념은 지난 세기 전반기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물론 완전한 경제민주주의가 구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 경제생활 노동생활의 모든 부문을 포함하는 경제민주주의의 현실태를 결정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24] 국제무역질서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회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 경제민주주의의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 공동결정제도의 발전사를 볼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민주주의의 이념이 경제생활의 내용으로 될 것인지와 이것이 보다 나은 세

24) 독일의 현행공동결정제도에 관해서는 Horst-Udo Niedenhoff, Mitbestimm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0. Aufl., Köln 1995 참조.

상의 형성에 기여할 것인가는 오로지 근로자들의 조직적인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5]

25) 이와 관련하여 Golo Mann은 "시대의 모든 피상적 유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흐름이 너무나 넓고 깊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흘려보낼 수는 있어도 중지시키거나 무시할 수 없는 조류가 있다. 나는 공동결정에 대한 요청을 한 시대의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중의 힘이며 또 시대적 정신이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결정에 대한 열망은, 독일의 건국자인 Konrad Adenauer가 자주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했던 일종의 자기결정에 대한 열망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Konrad Stollreither, Mitbestimmung, Ideologie oder Partnerschaft?, Köln/Berlin/Bonn/München 1975, S. 5에서 재인용.

제 3 장

문제인식의 출발점으로서 근로관계의 실체와 후기자본제경제의 구조적 현상

오늘날 경제구조를 기능적으로 보면, 그 체계가 분화되어서 경제적 현상이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 결정권력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오늘날의 경제현상을 파악해보면, 경제권력이 집중되어서 경제적 봉건시대로 복귀해 가는 것 같다. 경제적 공동결정에 대한 노동진영의 요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에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법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다른 한편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 또는 국가와 경제의 관계라는 구조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26]

---

26) 근로대중의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독일에서 공동결정사상이 확산된 이유는 개인을 장악하고 있는 듯한 불투명한 제도와 힘에 의한 생존의 위태화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무런 방어수단없이 조작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는 개개의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현상의 작용을 감지하지만 그 불가피성과 필연성을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불안감과 무력감은 - 특히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의 시기에 - 공동협의, 공동결정, 공동참가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한다. Stollreiter(각주 25), 14면이하 참조.

1.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현실상황

우리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근로자는 다른 사람, 즉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자이다.[27] 근로자는 근로관계에 기한 상하서열관계에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즉 근로자는 복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인적으로 종속되어 있다.[28]

위와 같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고용계약의 규정들이 동산임차계약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분명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용계약은 로마법의 노예임차계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고용계약의 아종(亞種)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 있고, 헌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유로운 이동과 직업선택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근로자의 종속성은 노동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29] Hans Freyer[30]가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 인간이 물화되도록 하는 기술의 "이차적 체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소외라고 이해할 때, 컨베어시스템과 자동화와 같은 노동과정의 계속적인 기술화에 의하여 근로자의 활동은 사용자

---

27)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28) 근로자의 종속성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6, 13면이하 참조.
29) Fabricius(각주 4), 14면.
30) Theorie des gegenwärtigen Zeitalters, 1955.

와 더욱더 인적 종속관계로 되고 더 많은 부분이 타인결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Oswald von Nell-Breung[31]의 말과 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의 분리"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같다.

2. 후기자본주의경제체제의 현실구조

최근 십수 년간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의 상황이 기술발전에 의해서 현저히 변하였듯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도 현격한 구조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의 법적 주체를 이루고 있는 주식회사를 생각해보면, 대중회사, 대중자본주의적 계획단위로의 확대와 기술발전은 첫째, 소유와 처분권의 분리, 둘째 재벌 및 기타 회사결합, 즉 독점과 과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시장경제의 독점과점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기업, 소비자 및 국가 간에 있어서 전통적인 개인자본주의적 관념은 현실적으로 커다란 변동이 아닐 수 없다.[32]

1) 대기업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산업화의 초기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보통 기업가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은 그야말로 "개인자본주의적 기업"이었다. 우리의

---

31) Arbeit und Mitbestimmung, in: A. Rauscher(Hrsg.), Mitbestimmung Referate und Diskussionen auf der Tagung katholischer Sozialwissenschaftler, 1968, S. 19ff.

32)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John Kenneth Galbraith(이기욱 역), 새로운 산업국가, 장문각, 1973 참조.

문제 대상인 주식회사에서는 일차적인 지휘권은 이른바 총회, 주주총회에 있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감사에 지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최고기관이다. 그러나 이미 거대한 대중자본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자의 모임인 총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배제되는 한편, 이사회와 감사(회)에 결정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규정에 의하면[33] 회사의 운영에서 주주총회가 사실상 배제되어 있고, 실질적 운영자가 주식소유자일 필요도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운영은 이사회의 고유한 책임이다.[34] 이러한 과정은 소유와 처분권의 분리라는 말로 파악할 수 있다.[35]

그외 기술발전은 경영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거대화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기술의 진보에 수반하는 다액의 자본을 충분히 조달할 만큼 대규모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36] 이러한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다액의 자금조달의 필요성은 주식의 분산을 가속화하고, 그에 따라 회사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주(持株)의 비율은 점차 낮아져서 자본에 의한 기업지배는 더욱 어렵게 된다. 게다가 주식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주주들은 애초부터 주식배당이나 주식매매에 의한

33) 상법 제3편 제4장 참조.

3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그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상 1인 대주주 또는 몇몇 과점주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기업에서는 주주식회의 형식이 무색해진다. 재벌그룹차원에서는 “이사회”라는 회사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장”이라는 절대적 명령권자만 있고, 소유권과 경영권이 세습되고 있다.

35) 강희원, 역할질서로서 노동법-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한 법사회학적 일언 -, 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 박영사 1994, 45면이하.

36) 현대기업이 대규모화하는 이유를 Galbraith는 독점이나 규모의 경제성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기획화에서 구하고 있다. Galbraith(각주 32), 114면.

이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기업경영에 무관심해진다. 그 결과 기업경영의 사실상의 지배력은 자본주로부터 경영자에게로 옮겨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이 지배를 상실하고, 그 대신에 과학적 관리기술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그 방면의 전문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문경영자는 특정의 자연인이 아니다. 기업에 있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J.K. Galbraith는 현대의 경제사회를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자연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조직을 통하여 집단인격(Group personality)을 결성하는 노력으로 이해하면서 현대와 같은 고도산업사회에 있어서 조직의 핵심요원은 오직 테크노스트럭처(technostructure)일 뿐이라고 한다.[37]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자본회사에 있어서는 경영자가 기업가의 기능을 인수하여, 자본과 노동을 합목적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며, 법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에서는 법인이 기업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기술적 발전은 기업가의 기능적 맥락에서 보면 대기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2) 기업구조에 대한 기술발전의 영향

John Kenneth Galbraith가 언급하고 있듯이[38], 대자본의 투하와 연관되어 있는 기술로 인하여 강력한 대기업의 세계는 그것이 기여해야 할 인간을 점차 종으로 만들고 있다. 그외 시장은 재벌, 카르텔 및 독점 또는 과점적 성격을 가진 기타 기업결합이 생긴 영역에서, 즉 집단자본주의적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본래적

37) 위같은책, 94면 이하 참조.
38) 위같은책, 125면.

의미에 있어서 시장은 경제구조에서 지배인자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은 대기업의 원망과 필요에 적응하여 변질되고 있다. 소비자습관과 일반대중의 경제행태는 생산기업의 필요조건에 적응하여 변경된다.[39] 더우기 이러한 결과가 기업측의 적극적인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대적 대기업은 기술부문의 과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영역의 지식까지도 기업의 실질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영역에 투입한다. 우리가 기술이라고 지칭하는 과정은 생산을 준비하기 위하여 과학자와 과학적으로 교육된 전문가의 투입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자본의 투하를 필요로 한다.

개인들이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춘 현대적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생산에 뿐만 아니라 판매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다. 대기업에는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상품구매를 선전하기 위하여 상품판매를 위한 거대한 기구가 구축되어 있다. 판매조직에 투여되는 비용과 인원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유통부문이 고유한 재화생산부문으로 평가될 수 있고 또 독자적인 경제영역으로서 기업화되고 있다.[40]

a) 대기업에 있어서 계획은 생산의 준비 뿐만 아니라 생산 및 판매의 핵심이다. 계획은 많은 기술투입과 이와 결부된 시간과 자본의 확정을 통해서 기업에게 강요되었다. 사실상 계획은 경영진이 관련 전문가집단과 협동하여 수행하므로 전문기술이 자본으로부터 경영을 독립하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계획은 “생산의 결정인자로서 가격과 시장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 대신 무엇이 어떠한 가

39) 위같은책, 175면 참조.
40) 위같은책, 285면이하 참조.

격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권위적인 확정이 대두한다." 준비와 생산을 위한 비용에 대한 많은 투자 배후에는 생산품을 판매하는 강제가 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 부문에있어 점진적인 시장의 폐지와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의 폐지를 초래한다.

b) 기업집중으로 시장구조가 왜곡되고 있다. 대기업이 공급원으로 편입되면서, 위에서 기술한 상황은 첫째, 기업의 수직적인 통합을 초래한다. 예컨대 석유회사는 필요한 원유를 위한 생산회사로 등장하므로 시장과 독립적일 수 있다. 둘째,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경쟁자들이 다른 경쟁자들에 의하여 인수될 때, 위에서 언급한 상황은 수평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산업부문에 있어서 최근의 기업집중은 여러층의 생산계열을 가진 혼합재벌로 나타난다. 예컨대 현대, 삼성 등과 같은 대재벌은 설탕, 밀가루의 생산 뿐만 아니라 해운업, 보험업, 자동차산업, 건설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업들이 서로 착종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기업이 산출하는 용역 또는 생산품에 의해서 야기되는 회피불가능한 위험을 다른 기업의 용역 또는 생산물로 방지할 수 없게 된다. 본래 시장이 기업체제의 성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시장은 몇몇 판매자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기업체제가 시장을 결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이론은 이러한 현상을 과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

c) 현대 산업체제에 필수적인 계획은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을 폐지하거나 현저하게 제한한다. 기업의 계획은 오히려 기업에 의한 가격통제를 전제로 한다. 대기업은 생산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통제되지 아니한 시장의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황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 "통제된 가격은 계획에

있어서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되지 아니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이 생긴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기 위하여 생산과 비용의 통일을 조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과점상태에서 담합이나 합의를 하거나 한 기업이 가격지도적 역할을 한다. 즉 모든 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가격을 계산한다. 다른 기업은 이 가격형성에 동의한다.

d) 판매통제의 필요성은 개인의 행태에 대한 통제로서 가격통제의 필요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수요의 조작을 위해서 최종소비자로서 개인과 국가의 구매결정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통제와 가격통제가 필요하다.

수요의 통제 또는 조작은 더욱더 확장되어, 산업의 각 부문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모든 산업부문으로 발전한다. 수요의 통제가 단순한 설득기술로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수요조작의 핵심은 일정한 생산물을 위한 판매전략의 발전에 있다. 제품 자체의 모양, 판매전략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제품의 특징개발, 모델의 변경, 포장 등이 이에 속한다. 모든 의사소통망, 판매조직의 공시, 거의 모든 영업부문, 연구를 위한 수많은 용역기업, 교육과 응용부문이 이러한 과제를 인수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매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을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떻든 이러한 수요통제와 조작은 현대산업체제의 체계내재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업무는 산업체제 내에서 실현된다.

3) 기업과 국가의 결합

산업체제는 가격통제를 필요로 하고 확정가격으로 제공된 상품의 구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 이러한 산업체제는 국가와 밀접하게 결합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41] 이것은 오늘날 경제의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a) 현대자본주의적 경제에서 국가는 대기업의 고객으로 등장한다. 공재정 또는 공공사업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거의 다시 사기업으로 흘러간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시설, 에너지개발, 교통시설, 택지개발 등을 위한 정부지출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공영역의 수요에 의하여 첨단기재의 판매시장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과 생산에 뿐만 아니라 공급된 제품의 사용에 대한 자문에서도 산업체제와 국가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업은 수뢰사건에서 가시화된다. 우리는 방위산업을 둘러싼 먹이사슬, 수서사건, 한보사건 등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정경유착의 사건을 통해서 국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외에 전문가양성, 연구기획의 재정을 위한 비용은 단지 부차적인 것에 불과 할 것이다.

b) 현대적 산업체계에서는 구매력 및 이에 종속된 생산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한편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충분한 구매력을 창출하면서 전체적인 유효수요를 규율한다. 경제성장의 불가피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조종을 목적으로 하는 완전고용은 임금 및 가격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금과 가격의 상승곡선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다. Keynes는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42]에서 이러한 정책을 위하여 자유방임주의의 후퇴와 조종적 화폐경제의 도입이라는 수단을 국가에게 준 이

41) 이러한 맥락에서 후기자본주의를 국가에 의해서 조직되고 통제되는 자본주의, 즉 국가자본주의라고 한다.

42) Keynes(deutsch von F. Waeger), Theorie der Beschäfting, des Zinses und des Geldes, 3. Aufl. Berlin 1966.

후에, 국가는 산업체계의 필요조건을 이행한다. 안정을 위한 법률에 기한 특히 이른바 “협연행위”를 통한 통화정책적 조치를 들 수 있다.

c) 국가는 곤궁에 처한 대기업을 시장원칙에 따라 도산하게 놓아 둘 수 없다. 도산한 한양건설의 법정관리, 한보철강의 구제 등은 공공복리를 위한 대기업의 보존이라는 시각에서 국가와 대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보여준다.

d) 대기업이 국가의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제정 또는 입법저지을 위한 영향력행사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 대한 로비를 위한 엄청한 비자금(秘資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6공화국시대에 있어서 재벌기업의 전·노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제공사건, 한보사건, 그리고 1996.12.26. 노동법안의 날치기 통과사건, 삼미재벌법정관리신청사건 및 최근 김영삼 대통령 차남 소위 “김현철 스캔들 ”과 같은 대형사건을 보면, 대기업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3. 후기산업사회에 있어서 자유를 위한 새로운 발상전환의 필요

후기산업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국가-경제-사회의 관계를 평가할 때, 대기업과 국가의 긴밀한 결합은 더이상 부정할 수도 없거니와 이러한 현실은 결코 간과되어서도 안된다. 대기업과 관련하여 Galbraith는 다소 과장해서 대기업들 중 반은 이미 국가화된 경제영역 또는 국가와 연접된 행정복합체라고 말하고 있고[43], Kantzenbach도 “대기업이 상호간 및 국가와 협동하면서 집단자본주의적 부문

43) Galbraith(각주 32), 374면이하 참조.

내에서 경쟁적 기능구조(Mechanismus)는 이미 계획체계에 의하여 해체되었다"[44]고 하면서 집단자본주의적 대기업은 경쟁의 전체경제적 조종메카니즘을 무력하게 한다고 한다. 또 Jaeggi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융합은 "국가적 필수"라고 생각한다.[45] 소수의 재벌그룹들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Galbraith, Kantzenbach, Jaeggi의 말은 한국자본주의경제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국가와 기업의 협동이 어떻든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개인의 자유는 경제권력과 국가권력의 결합에 의하여 심각하게 위협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행위로 위장된 재벌의 명령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를 부르짖었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46] 무엇보다 대(對)기업관계 또는 대(對)국가관계에 있어서 개인, 특히 근로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과 방법이 강구될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진다.

---

44) Erhard Kantzenbach, Gedanken zur wirtschaftspolitischen Grundentscheidung, in: Jahrbuch für Sozialwissenschaft, Bd. 19(1968) Heft 2, S. 177.

45) Urs Jaeggi, Macht und Herrschaft in der Bundesrepublik, 1969, S. 38.

46)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과 다양한 방면에서 이른바 "다원적 시민운동"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제문제와 환경문제로 인하여 국가권력이 강화되어서 너무 많은 권력이 국가권력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 권력에 대하여 이른바 "대응적 권력(Gegenmacht)"을 조직해내야 할 상황에 있다.

제 4 장

노동과 소유권

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의 실질적 기초는 소유와 노동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47] 왜냐하면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노동에 의해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진부한 주제로 치부하기 때문인지, 또는 소유권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인정되는 헌법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더이상 논의의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일축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유권과 노동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법학영역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48]

---

47) 이와 관련 하여 Hermann Josef Wallraff, Eigentumspolitik, Arbeit und Mitbestimmung, Köln 1968 참조.

48)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약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현대노동법의 말씀론(Dogmatik)은 내용적으로 로마법의 용역임차(Dienstmiete)에 관한 법리에 따라 형성된 근로관계의 법리를 대부분 그대로 전제로 하고 있는데, 로마법상의 용역임차에 관한 법리는 로마시대의 노예제도에 터잡고 있다. 물론 로마법상의 용역임차의 법리가 현대노동법에 그대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본재생산의 법적 구조와 형식적으로 일치하였기 때문에 그러했지만, 근로관계에 관한 로마법적 사고의 수용

사회적 맥락에서 생산수단에 관한 소유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소유란 일차적으로 소유주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대상과 맺는 관계이지만 이 관계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그것의 사용 또는 수익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소유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산권은 사람들간의 정치적 관계이다.[49] "배타적인 권리"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요구라고 할 때, 이러한 요구에는 그것을 강제할 어떤 조직체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개념에는 그것을 집행하는 조직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50]

아래에서는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51]에 기초하여 기업 차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의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해보고자 한다.

은 "노동하는 자가 생명·자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라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소유권취득의 기본원칙이 노동법말씀론의 형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법적 모순구조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대국가의 주체인 시민계급은 근로자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의 주체가 아니라 국가적 후견의 대상이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근로대중의 궁핍을 국가적 보호입법으로 처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19세기말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노동보호법이다.

49) C. B. Macpherson,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김남두(편역): 재산권사상의 흐름, 천지 1993, 325면

50) 소유권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다. 권리의 개념에는 이미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권리외적 힘이 전제되어 있다. 근대의 개인주의적 사소유권은 이것을 집행하는 근대국가가 전제되어 있다.

51)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인식은 주로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Kwant의 견해에 의존하였다. Remigius C. Kwant, der Mensch und die Arbeit(독일어판), München 1968, 173-201면. 그외 노동과 노동철학에 관해서 Severein Müller, Phänomenologie und philosophische Theorie der Arbeit, 2 Bde. Freiburg/München 1994 참조.

1. 소유의 원천으로서 노동과 그 상황변화

노동과 소유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므로 특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 우리가 공산주의국가와 비공산주의국가로 구분하였을 때, 이들 양진영 간의 근본적 차이는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과거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철학적 및 법학적으로 고찰하였다.[52] 인간들 사이에 지금까지 소유문제가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소유를 둘러싼 갈등에 있어서는 소유가 정당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보통 합법적인 취득과 불법적인 취득으로 구분하고 합법적인 취득인 경우에는 더이상 그것이 정당한가를 질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는 소유에 관한 일정한 권원(權原 : Rechtstittel)을 주장하고, 이에 근거해서 취득한 경우에 그러한 소유를 합법적인 소유라고 부른다. 실정법에서 여러 가지 권원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누구나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물건 또는 처음으로 발견한 물건[53], 소유주가 불명확한 물건을 일정기간 점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할수도 있고[54] 또는 증여[55], 상속[56] 등으로도 물건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근대 자연법론자들은 노동이 자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소유자로 결정하는 원초적인 권원이라고 생각하였다.[57] 어쩌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사회에서 노동이 사소유의 원천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

---

52) 그 중에서도 특히 Locke, Hegel 및 Marx 등을 꼽을 수 있겠다.
53) 민법 제252조 참조.
54) 민법 제245조, 제246조 참조.
55) 민법 제554조 이하 참조.
56) 민법 제997조 이하 참조.
57)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M. Brocker, Arbeit und Eigentum. Der Paradigmenwechsel in der neuzeitlichen Eigentumstheorie, Darmstadt 1992 참조.

이라고 할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창의성과 기술적 능력에 기하여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그가 스스로 완성한 그것은 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책 또는 논문은 저자에게 귀속하고, 화가가 그림의 소유자이며, 조각가는 조각작품의 소유자이다. 미지의 지역을 탐험하였던 개척자가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섬을 발견해서, 그곳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해서 섬의 일부를 경작지로 만들거나 밭과 목초지로 바꾸었다면, 그 땅은 그의 것이 된다. 물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노동에 의하여 실질적 유용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지구의 일부를 유용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노동의 과실로서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가? 노동마저 개인의 소유를 완전하게 정당화하는 원초적인 권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는가?

개인이 그에게 이미 속해 있는 재료와 도구로 작업하는 한, 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한 이러한 관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러한 종류의 노동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신제품을 발명했다고 할 때에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과 아이디어만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은연중에 응용하였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였을 것이 확실하다. 결국 오늘날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노동력 또는 자기의 고유한 것만을 사용해서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자신이 자란 사회로부터 행위양식, 기법, 생각을 전수받는다.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물론 역사에는 인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로부터 우리 모두는 상당한 도움을 받

고 있다. 우리 모두의 행위에서 우리는 전시대의 인간들이 이룩해놓은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수받아서 이용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서 우리가 공동의 성과를 약간이라도 진보시켰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 자신의 기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이전에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기획하고 발전시켜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룩해 놓은 방법과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58]

그 뿐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에 속하는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역사를 개관해 보면, 대부분의 노동은 이러하다. 경우에 따라 예술가의 노동은 이러한 부류의 노동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예술가의 노동은 창조적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재료와 간소한 도구를 필요로 할 뿐이다. 화가는 화판, 물감및 붓으로 족하다. 그는 그림의 동기를 찾기 위하여 야외의 자연으로 나가서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수집할 수 있다. 그가 재능이 있다면, 이러한 약간의 재료로 거대한 값비싼 것을 이룰 수 있다. 과학자도 이와 유사하다.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약간의 보조수단으로 걸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이와는 현저히 다르다. 상품생산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전에 벌써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처음에 주로 농업부문에서 나타났다. 고대나 중세에 왕 또는 영주는 대토지소유자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의 영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이들

58) 이와 관련하여 특허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특허제도는 노동과정에서 발명을 한 사람은 이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사회적 착종을 가지게 된다.

의 영지는 다른 사람, 과거에는 노예나 농노에 의해서 경작되었을 것이고, 만약 오늘날이라면, 농업근로자에 의해서 경작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공업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수공업부문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단순하였다. 왜냐하면 수공업자는 간단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서 소규모로 작업하였기 때문이다. 수공업은 가내노동으로서 자유시민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 수공업적 생산에서는 개인은 누구나 손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생산은 집에서 자신의 재료와 자신의 기구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날의 산업에서 이러한 현상은 상당히 달라졌다. 현대산업은 대규모시설에서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제도와 조직의 도움에 기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이러한 대규모시설은 거대한 에너지망과 연결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또 현대적 생산은 국가 및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여러가지 교통 통신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도구로써 자기 소유가 아닌 재료를 가공한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소유란, 그것이 자신의 재료와 도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로지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이 법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59]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의 소유물이란 것은 거의 모두가 다른 사람의 노동의 산물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특별한 경우에 "그는 꾸준한 노동으로 대소유를 이룩했다"고 말하는 때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노동과 자신의 재료만으로는 그 누구도 오늘날은 부유해질 수 없다.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 그것을 이룩하였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이 오늘날 더이상 소유의 권원이 아니라고 주장해

59) 민법 제211조 참조.

서는 물론 안될 것이다. 노동하는 인간과 자신을 수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물건 간의 단순한 관계로서의 소유 개념은 거의 다 사라졌다. 여러 명이 생산한 결과가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될 때, 노동은 인간과 생산된 물건 간의 관계를 더욱더 불평등하게 착종시킨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하고 과거에는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이 새롭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지난 시대의 법학자와 철학자의 말은 오늘날 더이상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들의 말은 그들 시대에만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노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거보다 오늘날 더 타당하다.[60] 옛날에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집단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인간들을 만날 수 없다. 오늘날의 노동대열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노동으로 일상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퇴직년령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생필품에 대한 욕구를 그들이 이전에 수행하였던 노동에 의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간이 수행한 노동과 그 성과의 상관관계는 오늘날 너무 복잡하여 투명하게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 개인이 기여한 것은 전체에 대한 몫, 즉 계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몫에 기하여 비로소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몫에 불과하다. 어느 한 사람의 기여에 대한 몫이란 다른 사람들의 기여없이는 있을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은 모두 각각 유용하고 의미있는 것이지만, 그 노동의 성과는 많은 다른 사람과의 협동 속에서 비로소 얻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특정인에게만 귀속

60) 노동의 의미에 관해서는 Jozef Tischner, Über den Sinn der Arbeit, in: Festschrift für Alfred Klose zum 60. Geburtstag(Die soziale Funktion des Marktes. Beiträge zum ordnungdpolitischen Lernprozeß) , Berlin 1988, S. 225-235 참조.

될 수 있고 또 귀속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의 노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노동생산물이 그의 소유라는 기본원칙을 생각하면서 그 생산물을 그 개인에게만 분배하려고 한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개인은 노동과정의 종료후에 그 자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함께 전체에 편입되어 있다. 노동과정에 참가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과도하게 주장하면, 다른 사람의 몫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61]

노동주체에게 돌아가는 노동생산물에 대한 지분은 고대, 중세에는 거의 없었고, 근대에는 너무 적었다. 오늘날에도 노동의 지분은 단순히 제공된 노동의 기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급부가 매매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 노동력의 제공이 많으면, 노동급부는 값이 싸진다. 왜냐하면 적은 가격으로 많은 사

61) 지난 세기에 노동생산물은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을 소유하고 이를 조직한 사람의 소유물이라는 사상이 지배했었다. 자기소유의 생산시설에 얼마간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소규모로 제조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제조업자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 근로자는 제조업자의 보조자이다. 물권법적으로 말하면, 점유보조자이다. 그런데 "제조업자(Fabrikant)"라는 말은 무엇인가 생산하고 조립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개념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만드는 사람(Machende)"이다. 노동자는 그의 도구이다. 스콜라철학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를 때때로 causa prinzipal로, 근로자를 causa instrumentalis로 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가 주원인자이고 근로자는 주원인자의 도구적 부속품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제조업자는 고유한 의미에 있어서 제조하는 사람, 즉 생산물의 소유자라는 것은 지당하다. 물론 그는 제조에 기여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의 생산물은 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양식이 적용되었던 시대는 실제로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그럼에도 오늘날에 여전히 대기업가는 과거의 제조업자 처럼 여러 사람의 협업에 의하여 생긴 노동생산물, 즉 노동가처분의 세계 일부를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가 오늘날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람의 노동기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주체가 노동과정을 지배하고 전체 노동과정에서 얻은 생산물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있을때, 비로소 노동은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목적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세계, 노동공간 및 노동수단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또 노동생산물이 그 타인에게 귀속하는 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세계에 구속되어 있다. 그것이 그에게 노동의 기회와 생존을 유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동영역에 있어서의 주된 이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서 일하였다. 근로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전혀 도달할 수 없었던 복지를 가지게 하였지만, 아직 자신의 복지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해결되어야 할 당면문제이다.

2. 소유권의 공동체적 성격

"소유" 또는 소유권(Eigentum)"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에는 그 불가침적인 의미를 상당히 상실하였지만, 지난 세기 동안에는 분명히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유권의 개념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추상적인 법적 개념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추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소유"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을 뜻한다. 그렇지만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나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범위에서 그것이 나의 것인지는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예컨대 나의 손목시계는 내가 찰 수도 있고 차지 않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시계를 집어들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으며, 길바닥에 집어던지거나 짓밟는 것도 나의 자유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것이

나의 소유라는 이유로 내가 자유롭게 또는 자의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소유라는 개념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은 항상 변하고 있다.[62] 지난 세기 동안 제조업자는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에 대하여 일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소유자이었다. 그의 공장을 가동하는가 폐쇄하는가는 그의 자유이었다.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매도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것도 제조업자의 자유이었다. 제조업자는 노동자의 생계비나 자신의 이윤과 관계없이 임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 제조업자가 기업이윤을 어떠한 방식으로 낭비해도 그것은 어떠한 제한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았다. 대토지에 관한 소유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관한 소유에 있어서도 소유권자에게 폭넓은 행위자유가 보장되었다. 기업가는, 우리가 손목시계를 처분하는 것과 같이, 수십 또는 수백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공장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십 또는 수백명의 생계를 결정하는 기업도 거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조업자의 사적 소유물에 불과하였다.

오늘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개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 내적 구조상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63] 이러한 제한은 물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즉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대상물의 내적 본질 또

62) 이에 관해서는 Helmut Leipold, Eigentum und wirtschaftlich-technischer Fortschritt. Eine dogmenhistorische und systemvergleichende Studie, Köln 1983 참조.

63)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토지 및 생산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공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토지사유제의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학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Henry George(김윤상 역),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특히 317-394면 참조

는 사회적 구조에 상응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내적 본성 또는 사회적 구조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이 그 본질상 다른 사람의 이익인 것을 자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자유는 사물의 내적 본성을 도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적인 소유개념은 오늘날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물의 본래적 구조를 해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사물의 본래적 구조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유권의 내용은 사물의 본질적 구조에 따라 공동체에 유보되어 있다.[64] 때때로 공동체가 부당하게 개인의 소유권을 삭감할 수도 있다. 공동체가 그 구조상 개인에게 속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개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조직을 만들 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개개인은 자기 생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의 생존은 전체세계와 결부되어 있다. 개인은 전체세계의 작은 일부이고, 이러한 일부에 대한 보장없이 개인은 생존을 영위할 수 없다. 공동체도 개인과 그 자신에게만 속해 있는 일부를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도 자의적으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소유관계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는 영역을 자기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영역은 그 개인의 소유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은 현대산업사회에서 보다 자명하게 된다.[65] 아직도

---

64) 소유권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내재적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모든 권리는 그 내용이 공동체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5)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는 특히 생산시설에 관한 소유권의 내재적 한계가 별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회가 기능적으로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내재된 모순적 관계가 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유권관계가 상위관계로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결정할 수 없게 될 때, 소유권의 내재적 한계는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 제한원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적 산업에 있어서 노동영역과 노동수단에 관한 소유가 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대의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은 그 구조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할 수 없다. 오늘날 기업가는 자신의 개인적 재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의 성과도 이용한다. 역사 전체를 볼 때, 일정한 순간에만 누군가가 자동차 또는 텔레비젼수상기를 만들고, 큰 호텔을 신축하거나 휴양소를 만들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품을 오늘날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공동체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기업가는 어느 정도의 재정력, 즉 사회의 일정한 복지상태를 전제로 한다. 개별 기업가는 스스로 창조하지 아니한 통신체계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가의 창의력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안정된 사회에서 비로소 발휘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가는 이러한 여건을 스스로 창조하지 않았다. 기업가는 교육받은 노동력, 때로는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는 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요컨대 그의 창의력은 그것을 위한 여건이 성숙된 사회에서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일정한 독창성은 갑자기 일정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은 그 상황이 그의 독창성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독창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독창성을 발휘한다. 독창성이 과거에 발휘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왜 그것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았는지를 놀란다. 공동체의 상황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동시에 요구한다.[66]

등장한다.

66) 정신적 부문에서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확인될 수 있다. 일정한 시점에 사

위와 같은 사정은 기업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설령 천재적인 기업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가는 공동체 내에서 성숙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해서 창업하고 이에 기하여 부를 축적한다. 물론 기업가들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공동체의 발전이 그의 독창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들은 공동체의 자본을 바탕으로 기업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순간에 독창성이 발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독창적인 계획이 항상 뒤늦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일찍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창조적인 계획에 관한 한, 시기상조는 운명적이다. 이러한 기업계획에 투여된 기업가의 창의력은 그 당시 사회적 공조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일정 상품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정신적 태도가 새로운 노동양식에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기업가가 성공하려면 경제외적 요인까지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기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자는 보수적 세력이 새로운 것을 더이상 붙잡아둘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멀리 후퇴

상가들이 사회현상에 관하여 새로운 종류의 명제를 제시하여 정신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명제를 정치한 언어로 구사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였던 사상가들은 그야말로 천재들이었다. 공동체에서 생기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의 가치를 알고 있다. 이들의 감지력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종류의 명제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정신적 선구자의 공적을 결코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이들은 그러한 현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첫번째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음미해보면, 새로운 견해와 새로운 진술이 그 자신에게만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예컨대, Martin Heidegger는 1세기 전에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의 철학적 시각은 공동체적으로 이룩된 인간의식생성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느꼈던 바를 첫번째로 보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적 능력의 결과이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지력도 발휘해야 한다.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은 그 구조 때문에 개인의 처분성을 초월해 있다. 개인의 조력으로 생산되는 생산물은 아주 많은 사람의 사용을 위해서도 결정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취급되고 기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이들 인간이 생활할 수 있다. 즉 이 두 가지로 이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생산되고, 또 이들은 생활을 위한 소득을 얻기위하여 노동을 한다.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은 구조 그 자체로 많은 이들, 정말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하다. 오늘날 도시, 지역 또는 국가에 있어서 인간의 생활은 그곳의 기업에 좌우된다. 기업이 사소유일 때, 공동체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업경영이 잘못될 경우,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위협적이다. 생산시설이 소수인을 위한 소득수단일지라도 그것은 동시에 공동체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생산시설, 즉 기업은 개인의 이윤수단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존의 원천과 복리의 도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는 현존하는 산업이 이러한 목적으로 경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는 소수집단 또는 개인의 사회적 태도와 선의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경제정책은 우선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극적인 방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입법은 공동체의 이익이 소수의 부당이득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의 노동입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현대적 생산시설이 소유자가 아닌 전문경영진의 수중에 그 관리가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개인이 대기업의 단독소유자로서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개 소유권은 다수인, 회사에게 있고, 자주 여러 사람들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다. 때문에 John K. Galbraith는 현대기업의 형식적 소유자는 기업 그 자체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전문경영자라는 결론을 내린다.[67] 이렇듯 현대기업에서는 새로운 경영계급이 실질적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법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경영자들도 근로자에 불과하다. 전문경영자는 근로자로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들은 근무에 대하여 봉급을 받는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대부분 자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현대기업에서는 생산기구와 행정기구의 중요한 분과를 지도하는 익명의 집단이 조직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동시에 소유자인 기업가가 지난 세기에는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현대적 대기업에서는 소유자가 경영자인 경우는 극히 예외에 불과하다. 물론 오늘날에도 소기업에서는 소유자인 기업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소유자는 개인에게 훨씬 더 많이 부과되는 세금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라는 법형식에 숨는 경우가 많다.[68]

3. 근대적 소유관계에 있어서 노동과 그 주체의 분리

전세기의 자본주의체제와 금세기의 공산주의체제는 외부적으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둘 다 "극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꼭같은 근본악(根本惡)에 기초하고 있다.[69] 양체제에 근로자는 노동공간에서 생산에 관한 처분결정을 함

---

67) Galbraith(각주 32), 94면 이하.

68)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서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필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물론 동양식 기업풍토의 전형인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표적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회사기업총수 가운데 약 96%를 주식회사형태가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회사자본금액의 95%이상이 주식회사의 자본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희영, 경영학총론, 다산출판사 1987, 255면.

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권력하에 있는 노동도구로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자는 노동여건을 그 자신의 것으로 느낄 수 없다. 노동공간 그 자체는 근로자에게 배타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실현하고 그와 가족을 생활할 수 있게 한다. 노동세계에서 인간은 그의 실존을 다른 사람에게 의미있는 실존으로 전환할 수 있다. 노동의 영역에서 인간은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서 실현된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체제 하에서는 근로자의 관심사인 노동영역은 사실상 타인의 지배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과 그 성과는 타인의 강제력하에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공동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노동 밖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70] 노동은 그에게 있어서 순전히 호구지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다.

노동영역과 노동주체를 외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노동영역에 있어서 노동과 노동주체의 관계를 타락시킨다. 노동주체를 타락시키는 극단적 현상은, Marx가 생각하였 듯이[71] 사소유제도에만 기인하는

---

69) 이 점은 공동체와 개인의 긴장관계에서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와 공산주의체제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개인에게 속할 수 없는 공동체 고유의 것까지도 특정개인, 특히 생산시설의 소유자로서 개인에게 처분을 허용해서 공동체의 기초가 파괴되었고, 공산주의체제는 공동체에 맡길 수 없는 개인고유의 것까지 공동체가 관리처분하도록 하여, 즉 특정개인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다른 개인을 억압하도록 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70) 그래서 현대산업사회에서는 노동과 여가의 관계가 전도되어 있다. 근로자는 자기실현을 위해서 노동한다고 말하지만, 여가를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가의 추구는 새로운 노동을 창출하고, 결국 인간은 노동에 종속되고 만다.

71) Marx는 생산시설은 내적 성질 또는 내적 구조상 공동체 그 자체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소유를 극단적으로 폐지하는 제도, 즉 공동체 또는 국가의 독재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독재적 권력이 노동영역을 지배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 생긴다.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집중화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한다. 집중화가 진행하는 만큼 미성숙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다. 대자본주의에 의해서든 맑스주의적 실천에 의해서든 집중화가 촉진된다. 대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이익에 대한 사유는 공동체세계를 사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극소수에게 귀속시킨다. 이와 동일한 악은 대자본주의에서나 맑스주의적 실천에도 있다.

에 개인이 그 사소유권에 기하여 사적 목적만을 위해서 공동체의 것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해칠 위험이 생긴다는 것을 직시하였다. 19세기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위해는 정말 심각하였다. 생산력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시설은 그 구조상 공동체적 성격이 가속적으로 증대하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리하고 말할 수 있다. 사소유권은 개인이 공동체 전체에 귀속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민적 이데올기이다.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은 이러한 구조적 성질에 의하면 근로자의 관심사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리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근로자의 노동은 강요된 노동으로 전락하였다. 즉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관심사에 속하는 것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다만 임금의 형태로 노동의 성과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 근로자는 노동결과로부터 소외되고 또 노동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결국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근로자는 자기의 노동을 혐오하게 된다. 왜냐하면 노동의 인간적 존엄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은 공동체생활을 위한 유인력을 상실하고 빈곤의 강제에 의한 어쩔수 없는 고통으로 변한다. 그래하여 계급투쟁이라는 맑스주의적 개념이 잘 어울리는 불평등한 사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Marx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예리하게 적시하였다. 소유와 관리 및 이용이 분리되는 경향에서 그는 악의 원인을 찾고 이에 대한 급진적인 처방을 내렸다. 그래서 Marx는 사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하여 공동체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경제구조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사적 집단에게 맡겨놓도록 해야 한다. 사적 집단의 노동부문은 당해 경제적 분과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부문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다. 그렇다고 가능한 한 넓게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주장될 수도 없다. 경제적 이익이 사회적 이익으로 성장하였을 때, 국가권력이 이에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사회적 관계를 감시하여 경영이 잘 못되려고 하는 곳에 개입하는 것이 국가가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것 보다 훨씬 바람직하다.[72]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발전은 분명히 부담이 되었다. 모든 것이 국가의 권력에 주어져 있으면, 부정이 있을 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보다 높은 통제기관이 존재할 수 없다. 미성숙한 국민계층의 무력한 비판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생산시설에 관한 소유권은 그 구조상 현저히 상대화되어 있다. 그런데 특정개인에게 생산시설이 절대적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전통적 소유권개념은 생산시설에 대하여 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유권개념은 지극히 유해하다. 소유권의 상대화는 소유자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회적인 대상을 사용하고 자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소유로 하는 경우 그 본질상 공공복리에 저촉되는 대상이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상대화가 필요하다. 소유권이 충분히 상대화되었을 때, 그것이 일반인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한다. 사소유의 상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대화의 정도는 그때그때 개인의 사소유 또는 집단이 사회적 이익으로 되는 정도와 비례해야 한다. 사소유는 그 대상이 개인 또는 소집단의 사적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만큼만 상대화되어야

72) 예컨대, 구소비에트연방에서와 같이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성립되었던 거대한 집중화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한다.

소유문제에 있어서 상황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도처에서 사소유재산의 상대화가 증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한 번 기도되었던 상대화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징지울 수 있는 발전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구조가 인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구조의 인간화는 생산시설이 개인 또는 소집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것의 사회적 성격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진보된 나라, 즉 경제적 이익대상의 사회적 차원을 인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소유가 상대화되었기 때문에 사소유문제가 핵심적 사회문제로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사소유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의 평정이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아니한 나라도 지구상에는 많이 있다. 아라비아와 남아메리카 및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상기하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사소유재산이 공동체 전체의 복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공공복지의 원천인 생산시설이 절대적으로 사인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사소유권의 행사에서 비롯된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상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토지 또는 생산시설에 관한 사소유권은 아직 Marx가 명쾌하게 기술하였던 사회적 장해력(障害力)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소유권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상당히 주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진보된 나라에서는 소유재산의 사회적 장해력은 소유권의 상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폐기되었고,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화에 대한 사적 소유는 공공의 복지의 원천을 소집단의 이익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많은 법률규정에

구속된다. 세금제도가 공동체가 공공에 유익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전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노동입법과 법률적인 사회보장은 생산체계를 통해서 다시금 가능하게 되는 수준에서 근로자의 물질적 상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모든 사회적 불평등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주장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소수에 불과하지만 막대한 권력을 가진 특혜집단이 있다. 공공복리에 대한 기여보다 많이 돌아가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집단에게 항상 적게 분배된다. 그러했던 19세기와 비교할 때, 이러한 분배문제는 오늘날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어려움은 소유문제 그 자체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회적 관계가 야기하고 있는 현실적 결과에 있다. 현대적 노동세계와 그 관계는 근대적 소유관계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즉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이 가장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개개인과 소집단의 사소유이었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그 당시 근로자는 다른 사람, 즉 소유권자를 위해서 근무하였다. 근대사회에서 근로자는 생산시설의 소유자를 위해서 강요된 노동을 하였던 인간이었다. 근로자의 노동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근로자는 스스로 자신의 노동양식에 대하여 아무런 공동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껏 노동기회가 있는 한, 그들에겐 기업의 성쇠도 중요하지 않다. 기업은 근로자가 결정해서는 안되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다. 공동결정법의 사상은 그 당시 매우 모호하게 보였다. 이러한 말의 의미는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기업의 사회적 성격이 인식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실무에 있어서 공동결정의 이념과 제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노동이 현대적 형태로 이해되었다. 과학기술과 생산시설의 발전으로 노동의 현대적 형태는 생산조직 그

자체에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계와 도구들이 생산수단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은 현존하는 것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명하다. 과거에서 전래되어 왔듯이, 오늘날 노동세계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생산주체가 아니라 생산수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모든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용자만의 시각에서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동세계는 수단으로서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현존상황이 현재의 인간을 형상화하는 것이 당연하였듯이, 현존 노동세계가 근로자의 현존형태를 창조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공동결정과 공동책임에 관한 요청이 근로자측에서 비로소 제기된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이러한 공동책임을 위한 공간이 노동주체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의 기능은 현존기구에 구속되어 있다. 이러한 고착된 기능은 노동주체로 하여금 수동적 행위(Activite passive), 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는 행동만을 하도록 그 성격을 결정한다. 그 결과 노동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은 현상을 변경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많은 근로자는 오늘날 이러한 관념속에 살고 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관계는 대부분 노동공간과 노동수단이 소유와 소득수단을 계획하는 소수의 소유이었던 과거의 소유관계의 결과이다. 사회적 상태는 기업가의 이익만 고려하지, 어떠한 관계에서도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관한 다른 정신적 태도가 현대적 생산관계에 그 근본이 되었더라면, 현재의 상황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4. 소유관계의 완화로서 경제적 공동결정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법이 생산관계의 형식으로서그 최선두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재생산에 있어서 법의 보루는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이다. 법에 있어서 종속노동의 지위는 무엇보다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과 소유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어떠한 사회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법적 과제이다.

오늘날 근로자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임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직 궁핍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주장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옳지 않다. 산업화된 국가에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제 어지간히 괜찮은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노동문제는 경제적 문제차원을 넘어서 인간적 문제차원으로 옮아가고 있다.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깊은 인간적 문제에 점점 많이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근로자 스스로도 보다 인간다운 노동상황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영역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결정권과 이에 기한 행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근로자라면 누구든 자신의 노동상황에 있어서 공동결정권을 목청높여 외칠 것이다. 누구든 인간으로서 일하고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어 한다. 누구든 단순히 노동력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누구든 생산기구내에서 하나의 부품으로서 수동적으로 작동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노동력을 담고 있는 살아 있는 도구가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으로서 주체적으로 살기를 바라고 또 그 자체로서 평가받기를 원한다.[73]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찾아야 한다. 그 해결방향은 근로자 스스로가 노동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근로자의 상황이 고권적 기관에 의해서 규율되어서는 안된다. 근로자 스스로 노동과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노동과정에 어느 정도의 행동자유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작업팀도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성된 노동수행기관이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근로자가 상의해서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노동집행을 외부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팀내의 관리자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그의 노동에서 진실로 인간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면,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든 진정한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근대적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노동과정에서 이러한 공동결정권을 실현하기는 아주 어렵다. 공동결정권은 기존의 근로관계구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피상적인 해결방안에 불과하다. 근대적 소유관계의 숙명적 흔적은 오늘날의 노동과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 시대에

---

73)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이러한 요청이 여러 가지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아랫사람이 예의의 일상적 규칙에 따라 말해야 하는 가치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봐요, 당신, 내 말을 못알아 듣겠소! …"와 같은 윗사람의 말투로 얘기하는데 대하여 크게 항의한다. - 이것은 윗사람이 그의 부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말투이다. 근로자는 노동한 성과에 대해서만 지불받는 것이지, 그가 노동상황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불되지 않는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후자의 것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시민생활에서 근로자는 가치있는 인격으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노동과정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도 인격으로서 인정받기를 요구한다.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향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행은 오늘날 노동관계의 구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근로관계의 구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치 현대산업의 기술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류의 원천은 인간에게서 찾아야 한다. 인간이 새로운 정신적 자세를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노동구조를 수정할 수 있고 또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은 노동을 조직하는 양식을 근로자 스스로가 노동과정 내부에서 결정하는 공동결정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해결은 관철하기가 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로관계구조 자체의 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실현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제 5 장

형식적 민주주의의 극복 : 경제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

개인이 그의 소유에 기하여 우세한 지위를 얻을 때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이스 로마시대의 초창기부터 인식되었다. 아테네의 Solon의 입법과 스파르타의 Lykurg의 입법이 노예제도에 기초하고 있던 고대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유권을 제한하고 또 불평등한 소유가 가져오는 결과를 어떻게 억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오래된 좋은 실례이다.[74]

근대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가 성립된 이후 입법과 법이론 및 법실무는 상속법과 경제법 등 기타 국가적인 개입수단을 통해서 소수의 수중에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정치이론은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와 동등한 소유분산의 긴밀한 관계를, 다른 한편에서는 소유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방법을

74) Jürgen Seifert, Eigentum und Demokratie, in: Joachim Steffen u.a., Fetisch Eigentum. Wie privat sins Grund und Boden?, München 1972, S. 7.

중심적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주제는 Aristoteles가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고, 그 후에 Montesquieu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민주주의에는 미덕(美德) 뿐만 아니라 법 앞에 평등과 물질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Rousseau에 있어서 민주정은 신분과 재산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확고한 것이었다. 이러한 평등없이 권리와 영향력의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관념을 우리는 미국헌법의 기초자, 예컨대 Madison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젊은 Hegel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공화국의 계속적인 형태가 엄격한 소유권에 의하여 얼마나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우리가 프랑스의 산스쿠로트주의(Sansculottismus)의 체계에 의하여 의도된 보다 큰 소유평등의 원천을 오로지 탐욕에서만 찾았을 때, 그것에 잘못을 범하였다"[75]라고 기술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소수의 수중에 사경제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서로 조화될 수 없다는 인식은한국헌법의 기초자에게서도 생생하였던 것 같다.[76] 그래서 경제력이 개인, 회사 및 사적 공적 조직의 수중에 뭉쳐져서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상은 제헌헌법에 침전되었다. 제헌헌법 제15조 제1항은 한편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유와 상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도 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제헌 헌법 제1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동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인정하여 기업소유에 대한

75) 위같은곳에서 재인용.
76) 유진오, 대한민국헌법 제안이유설명, 현민 유진오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 447-450 및 455-456면 참조.

획기적인 제한을 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제헌헌법은 제6장에서 자유경제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즉 제헌헌법 제86조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두가지 원칙하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제85조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을 국유로 선언하고, 제87조와 제88조는 중소상공업에 관해서는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기업, 독점성 공공성이 있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는 동시에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써 사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소위 기업사회화의 원칙을 규정하였다.[77] 제헌헌법에 의한다면, 이러한 헌법규정에 입각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수단의 사회화 또는 경제적 권력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규정들을 민주주의이론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제헌헌법의 기초자는 국가생활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헌법조항들은 사회주의이론에 그 근원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주의사상이 헌법적 과제로 승화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78] 그렇지만 이러한 제헌헌법의 조항들은 소박한 근대적 민주주의관념과는 관계를 단절하고, 민주공화국(제헌헌법 제1조)을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는 불변의 천년왕국으로 생각하는 사상에 대한 시대적 변용

77) 위같은글, 455면.

78) 이에 관해서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미국식민주주의도 소련식 민주주의도 아닌 이른바 제3의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즉 유박사는 “헌법의 기본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와 조화를 꾀하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진오, 헌법제정의 정신, 현민 유진오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 459면 참조.

이다. 제헌헌법은 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적 전제를 갱신하고 이를 위한 수단을 창설하는 과제를 급진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제헌헌법상의 이러한 규정들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에 시도된 개헌으로 재산권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사실상 그 힘을 거의 상실하였거나 형해화되었다. 또 오늘날 국제적 무역상황의 변화, 특히 우리나라가 산업강대국의 자유무역주의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제한하려는 급진적 시도는 모두 이단시되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에 의하여 소유에 대한 개입을 규정하는 모델이 다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치세력에게는 - 현재 적어도 환경보호 또는 도시건설촉진에 할당되는 가치를 고려하면 - 민주공화국의 물적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것보다 다른 장애요인의 제거가 문제이다. 소유에 대한 사적 처분권이 국가권력의 담당자에게 유해하게 될 지라도, 이것은 의식산업의 넓은 영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각자에게 동일하게 배분할 수 없고 자본축적이 생산양식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정당하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요청은 여전히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처분권과 (빈부격차를 항상 새롭게 탄생하게 할 수 있는) 임금노동의 원칙이 폐지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폐지는 Marx가 그랬던 것처럼 (제헌헌법의 제규정[79]의 전제로서 표현되었던) 정치적 성숙과 인간성숙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80]

시민헌법에 의해서 구성된 민주공화국은 Marx에 있어서 자본주

79) 특히 제헌헌법 전문,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등 참조.

80) Seifert(각주 74), 10면.

의적 생산양식의 폐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전장(戰場)이었다. 왜냐하면 시민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은 정치적 성숙만을 전제로 하였지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인간성숙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확정된 정치적 권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계, 즉 사회적 전환의 조건이다. Marx와 Engels는 정치권과 그 보장을 위한 투쟁을 모든 민주주의자들과 공동으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한번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Marx와 Engels는 정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노선에서 "법적인 색안경"을 통해서 현실을 보았던 사람들과도 투쟁하였다.[81]

우리의 현행 헌법은 그러나 자본주의생산방식을 표방하고 있는 헌법이지만, 자본주의생산방식만을 확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소유에 관련된 헌법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사유재산의 사회적 전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에서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헌법상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82],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는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변증법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법화된 정치의 허공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 기업에 있어서 자본이익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투쟁 또는 적정한 도시계획의 전제인 토지공사를 위한 무주택자들의 투쟁이 특별한 역사적 가치를 얻는다.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법질서를

81) 위같은곳

82) 물론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제헌헌법 제18조 제2항).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익규점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삭제되었는지는 그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자본과 노동의 역학관계를 탐구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헌법은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정치적 세력관계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맥락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의 흠결

1) 법치국가의 이념으로서 Kant의 개인주의철학

근대적 국가의 법치국가이념은 개인의 자유를 최고가치로 보는 Kant류의 개인주의철학에 기초하고 있다.[83] Kant에 의하면,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일반법에 따라 존속할 수 있는 한, 생래적 법, 자유 즉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자의로부터 독립을 위한 법이 있을 뿐이다.[84] 이것이 인간성에 의하여 모든 인간에게 귀속하는 유일한 원초적인 법이다. 윤리적 결정의 자유는 Kant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의 본질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인으로서 지위, 주체성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윤리적 책임에 기초하고 있어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자만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자유에서 평등이 도출된다. 자유에 근거해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법적인 우위를 가질 수 없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즉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인간은 생래적 권리를 가지며, 물론 다른 권리를 가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85]

자유와 평등은 Kant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 추상적 개념이므로 그 내용형성은 법질서에 일임되어 있다. Kant는 모든 사람

---

83) Fabricius(각주 4), 33면과 비교.
84) Kant, Metaphisik der Sitten, 2. Aufl., 1907 Einleitung in die Metaphysik der Sitten, Bd IV, S. 25
85) Fabricius(각주 4), 33면.

이 형식적으로 평등하면 소유와 생활지위에 의한 불평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86]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Kant에 있어서 재산소유와 생활지위가 사람들 간의 우열을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다. Kant는 자유와 평등개념을 추상적 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소유자인 지방귀족들만이 자유와 권리를 향수할 수 있게 된다.[87]

2)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현실의 괴리

Kant는 개인으로서 인간간의 공동생활이라는 개념에 출발해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해서 이상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88] 인간들이

---

86) Kant, Über dem Gemeinspruch: Das mag in der Theorie richtig sein, taugt aber nicht für die Praxis, in: Kant-Gentz-Rehberg, Über Theorie und Praxis, 1967, S. 61

87) 이미 Hegel과 Marx는 Kant의 형식적 법치국가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Hegel은 "개인적 인격"과 관련하여 Kant를 능가하였다. 개인적 인격은 그에게 "다른 것과 대립하고 있는 그것을 배제하는 추상적인 명확한 것이다. Hegel에게 자의식은 두 주체의 상호승인의 기초이다. 정신, 즉 의식은 주체가 만나는 수단이다. 서로 만나지 않고 주체로 있을 수 없다. Hegel은 Kant와 반대로 인격성은 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인민민주주의는 이론적 기초에서 Kant 보다는 Hegel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Kant는 인간집단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였다. Karl Marx는 Kant가 추상적인 인격개념에 의하여 배제하였던 구성요소, 즉 실질적 환경조건, 재산, 특히 생산수단의 소유를 자유와 평등에 끌어들였다. Marx는 생산수단을 생산을 위한 경제적 결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면 노동계급의 착취를 사용되는 물적 재화의 총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Marx는 생산수단의 소유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폐기하는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Kant의 자유는 오로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한다.

88) Fabrisius(각주 4), 57면.

완전히 평등한 때에만 완전한 자유가 현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상은 현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미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도식적인 자유와 평등은 있을 수 없다. Kant에 있어서는 오직 권리의 형식만이 중요하지, 권리의 대상인 물질 또는 객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자유개념은 노예, 농노, 종 및 세습하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통 사회적 실체는 언급되지 않는다. 법에서는 단지 형식적인 기회균등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투명한 자유"는 신체적 정신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소유의 정도에 있어서 불평등 뿐만 아니라 소유물과 생활지위와 같은 행복을 위한 재화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유와 평등에 관한 Kant의 이론은 고전적인 자유방임적 국민경제이론과 일치한다. 이렇듯 Adam Smith도 한 인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적 성격의 우위", "나이의 우위", "재산의 우위", "귀족적 출신"과 같은 4가지 원인을 인정하고 있다.[89]

이론적인 맥락에서 보면, Kant의 형식적 자유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헌법적 국가-사회, 국가-경제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타난다. 정치적 공적 국가에 비정치적 사적 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실질에서는 사회의 헌법적 정권이 사적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바이마르공화국의 헌법과 독일 및 한국의 헌법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국가와 사회, 국가와 경제의 민주적 통합은 국가생활에서 전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치국가에 있어서 중심적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와 여론은 정치적인 지배권력과 협력적이며, 복종적인 사회 사이에 있는 중개기관이다.

농노를 세습적 종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이른바 농민해방은 형

89) 위같은곳.

식적 법치국가가 가장 큰 실질적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방된 농노는 자유 그 자체만으로 살 수는 없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수단을 받지 못한 자, 즉 무산자는 결코 해방을 향수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실체가 법질서에 의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개인의 요구와 적응되어 질 때 실질적 정의가 있을 수 있다.

역사가 일의적으로 보여주듯, 농민해방은 노예제도 또는 농노제도의 형식적인 폐지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었다. 봉건사회로부터 농민이 해방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진정한 농민해방을 위해서는 해방된 농민에게 농토에 대한 소유권을 제공하는 토지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회적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산재분배가 필수적이다. 다른 한편에서 형식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하여 개인에게 고도의 통찰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전제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만이 개인주의적 관념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통합은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분화를 위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인간 그 자체에 있는 질적 징표와 환경조건적 징표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 그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불변의 특징은 법적 구분의 연결점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적 사상의 발전과 민주주의적 국가제도의 발전 이래 이러한 길을 향한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진다.

3. 실질적 법치국가로 가는 이정표로서 공동결정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의 기초는 헌법에 기본권으로서 보장된 인권이다. 이에 의하여는 자유가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일반권리는 과거에는 법률적으로 그 요건이 특별히 보장되

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단순한 법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었다. 그외 기본적 인권은 주관적 공권으로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프로그램적 원칙일 뿐이었다.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와 국가와 사회의 구분이 국가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 제23조상의 자유방임적 개인주의적인 재산권개념에 대한 동조 제2항의 공동체에 대한 재산권의 법적 구속성이 법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가 또는 윤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2항과 제3항은 이미 실질적 법치국가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어떻든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은 무제한적 공공복리와 재산권의 사회적 과제와 합치할 수 없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자 수중의 자산형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기대를 재산권의 공공복리적 구속과 연결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은 출신, 출생에 의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1조와 가정내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 제36조도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질적 형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해야 하는 것은 이들 헌법규정에 의하여 성적 평등, 부인에 대한 남편의 법적 지위의 후견적 성격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까지도 남편과 아내와의 평등은 형식적이다. 특정한 부문에 있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후견적 지위는 아내의 불완전한 개성에 대한 보충으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과거의 잔재이다.

경제에 있어서 공동결정이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적인 법치국가로의 발전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법정책적 요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공동결정을 요청하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자본과 노동의 평등”이라는 표제 밑에 제기된다. 그래서 공동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이 언급될 수 있다. 자본제방식이 지배

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자본과 비교해서 낮게 평가된다는 의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분배과정에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객체적 지위가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져 있지만, 결코 사회적 인간학적 기타 사실에 의하여 허용되어서도 안된다. 헌법 제11조가 노동과 자본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의 다른 부문에서 사회국가의 사상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듯이, 평등의 원칙은 자본과 노동의 평등에 대한 요구를 사회윤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발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법치국가의 사상과 평등의 원칙이 국가에 대하여 공동결정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개념은 실질적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용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 공동결정제도는 자본과 노동의 평등을 실현하고 법치국가의 실질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제도이다. 사업장 또는 기업 차원에서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우선 헌법적 차원에서 널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이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을 저지하는 규정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재산권보장의 근거, 자유주의 이론의 탄생근거 및 그 추구목적으로 소급해가서 개인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이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물적 재산과 집단의 공동재산이 꼭같이 평가될 수 있는지가 연구되어야 한다.

제 6 장

결 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제도는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 특히 노동법은 지금까지 제대로 실험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 없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직 초보적 단계에 있는데 벌써 경제적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 것 같으나,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라면 그것은 예외없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열심히 부르짖고 있지만, 경제적 영역에서는 독재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근대시민혁명은 정치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나 경제적 영역에서는 노동의 측면에서 보면 고대로마의 노예경제가 부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적 원리가 경제적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은 두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민주주의는 이편에서 개인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을 보장하고, 저편에서 정치적 권력을 사인의 수중에서부터 끌어내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적인

공동체에게 이양하는 것을 추구한다. 개인은 법적으로 승인된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공동의사의 형성에 자유롭게 공동작용을 한다.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는 두가지 기본적 세력을 주시해야 한다. 한편으로 개인은 경제적 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추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권력은 사인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종사자가 구성원으로서 속해있는 경제의 공동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경제공동체는 무수한 주체를 가지고 있다. 이들 주체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으며 결합되어 있거나 분화되어 있을 수도 있다. 본질적인 것은 사적인 이익에서가 아니라 공적인 이익으로, 사인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을 초월하는 공동의 수익이 귀속하는 제도의 이름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이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승인된 생활부문에서 경제적 공동의사의 형성에 자유롭게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기본개념을 노동과 소유의 관계에 끌어들여서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정도를 검토해보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현상태는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경제적 세력의 한계를 법적으로 정하여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노동의 자유투쟁단계에 있다. 이러한 과정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속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실현은 민주화의 일부일 뿐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유실현과 함께 실현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실현이 점점 증대함에도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만큼 실현되지 않고 있다. 소유의 공동체적 발전이 노동의 자유권적 발전과 일치할 때 비로소 경제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이것과 아주 거리가 멀다. 노동과 소유의 기본관계, 종속노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기본적 관계가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임금체계는 여전히 지배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노동자는 경제의 주요부문에서 사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사기업 위에 있는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위에 변화가 있는 모든 것은 사적 종속성의 정도를 변하게 하였지만, 이러한 종속성의 양태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속적 노동의 자유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것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서구제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는 경제적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법적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90] 근로자가

90)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른바 공동결정법에서 경영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법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현상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독일의 공동결정법은 노동의 자유권적 발전에 속하는 것이지, 경제의 공동체법적 발전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에 있어서 근로자의 공동결정권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경제권에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결정법은 사적 경제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적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경제적 공동결정권은 그가 국민으로서 행사하는 정치적 공동결정권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공동결정권은 공동체의사, 즉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반하여 경제적 공동결정권은 이러한 공동의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사적 의사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의 공동결정은 사적 영역에 있는 의사의 형성에만 작용하지 공동체의사의 형성에 작용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영역에서 공동체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권을 정치적 공동체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최고의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경제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룩된 발전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개인이 국가의 권능에 해당하는 권리를 국가의 이름으로, 즉 국가의 기관과 종복으로서

사회적 생존권을 지키면서 그것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체로서 근로자계층이 지속적인 노동운동을 통해서 경제력을 사적 향유자로부터 해체하고, 이를 경제공동체로 이양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동의 자유권적 발전이 소유의 공유권적 발전과 결합될 때 비로소 노동은 해방될 것이다. 즉 노동은 사적 착취로부터 해방되고, 공동체 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인간다운 존재를 위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와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적 권리에 해당하는 정치적 권리도 사적 권리였다. 경제적 권리는 아직도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정치적 발전수준에서와 동일한 사적 권리의 상태에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근대국가성립 이전의 정치적 발전단계에서도 피지배자의 정치적 공동참여권이 부분적으로 보장되었다. 이것은 중세의 가부장적 영주국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하게 된다. 가부장적 영주국에서는 영주가 모든 하인들의 주인이었고, 그는 법적으로 공동체에 구속되지 않으며, 그 자신과 관련된 개인법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신분의 작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신분은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었다. 그의 공동참여권은 인적으로 그에게 귀속된 고유한 권리이지, 공동체의 기관권은 아니다. 장원구성원자격이 부역지에 있어서 주인의 인적 권리를 제한하였듯이, 신분이 주인의 인적 권리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신분은 공동체의사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아직 영주와 신분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공동결정권이 오늘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대립하고 있는 한, 공동결정법은 기껏해야 경제민주주의의 공동체법적 발전으로서의 맹아적 세포에 불과한 것이지, 사업장을 넘어 종속적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공동체가 존재할 때 말할 수 있는 경제민주주의의 제도인 것은 아니다.

〔저자 약력〕

• 주요약력
  - 경희대 법대 대학원 수료
  -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변호사자격 취득
  - 독일 Freiburg대학 법학박사 학위취득
  - 삼원 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현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 주요저서 및 논문
  - Gesetzesflut und rechtsfreier Raum
  - 현대법철학의 흐름(공저)
  - 법의 녹색화와 녹색법학
  - 법에 대한 체계이론적 파악
  -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여
  - 역할질서로서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제38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기초법학적 재구성
  - 재적노조전임자
  - 노동법에 있어서 인간상 등 다수

근로자의 경제적 공동결정에 관한 연구(Ⅰ)

1997년 3월 27일 인쇄 1997년 4월 1일 발행	
발 행 인	朴 仁 相
발 행 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代) 02-782 -3884
등 록	81. 8. 21 (13-31호)
인 쇄	(주)우정미디어 (代) 02-324 -9762

가격 : 7,000원